

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108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: 2019년 10월 16일

발 의 자: 김호평, 이성배, 임종국,
송도호, 김제리, 고병국,
오현정, 노승재, 문장길,
김태호, 김경영, 홍성룡,
박순규, 최 선, 송아량,
한기영, 이준형, 이동현,
정진술, 문병훈, 이경선,
송정빈, 이상훈, 김재형,
서윤기, 오한아 의원 (26명)

1. 주 문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6조,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」 제37조에 따라 서울시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“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”를 구성한다.
- 나.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며,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.
- 다.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.

2. 제안이유

-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은 정부와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 정책에도 불구하고, 심각한 수준의 청년 실업률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

일자리, 복지, 주거, 교육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- 이에 서울시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청년정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청년정책을 위한 「청년정책기본법」 등이 여전히 미비된 실정이며,
- 특히, 서울시는 청년 일자리, 청년 창업, 청년 복지, 청년 주거, 청년 일반 정책 등의 업무가 각 실·국으로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청년정책 방안 모색이 더욱 필요한 상황임.
- 이에 서울시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청년문제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서울시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의 청년 정책을 견인하는 등 국가경쟁력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울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음.
- 따라서, 서울시의회는 청년문제에 대한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청년관련 조례 제·개정 및 청년 당사자들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함.

3. 참고 사항

가. 관련 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,
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」 제37조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-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은 정부와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 정책에도 불구하고, 심각한 수준의 청년 실업률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일자리, 복지, 주거, 교육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.
-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청년정책을 위한 「청년정책기본법」 등이 미비된 상황에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」 등의 청년관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,
 -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서울특별시 의회 차원에서 맡은바 임무를 다하려고 한다.
- 또한,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청년문제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서울시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의 청년정책을 견인하는 등 국가경쟁력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.
- 따라서,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청년 당사자들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도출하는 등 청년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올바른 청년정책을 마련하고자 “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” 구성을 결의한다.

2019. .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